**「1988저작권, 의장 및 특허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1988)」**

최종 개정일: 2015년 11월 16일

**□ 개 요**

이 법은 개정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을 재차 명시하기 위한 법; 실연자와 실연에 속하는 기타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법; 원본 디자인에 의장권을 수여하기 위한 법; 「1949의장등록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특허대행사와 상표대행사에 관한 조항을 만들기 위한 법; 특정 지역 법원에 특허와 디자인 관련 재판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특허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전자형태에서 작품의 복제보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에 관한 조항을 만들기 위한 법; 전파의 부정한 수신을 처벌하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기 위한 법; 상표의 부정한 적용이나 사용을 위반으로 만들기 위한 법; 런던 소아병원(Hospital for Sick Children, Great Ormond Street, London)에 수혜를 주기 위한 조항을 만들기 위한 법; 특정국제기구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PART I COPYRIGHT**Chapter I Subsistence, Ownership and Duration of CopyrightChapter II Rights of Copyright Owner…*Secondary infringement of copyright*22 Secondary infringement: importing infringing copy. The copyright in a work is infringed by a person who, without the licence of the copyright owner, imports into the United Kingdom, otherwise than for his private and domestic use, an article which is, and which he 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is, an infringing copy of the work.23 Secondary infringement: possessing or dealing with infringing copy. The copyright in a work is infringed by a person who, without the licence of the copyright owner—  (a) possesses in the course of a business,  (b) sells or lets for hire, or offers or exposes for sale or hire,  (c) in the course of a business exhibits in public or distributes, or (d) distributes otherwise than in the course of a business to such an extent as to affect prejudicially the owner of the copyright, an article which is, and which he 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is, an infringing copy of the work.24 Secondary infringement: providing means for making infringing copies.  (1) Copyright in a work is infringed by a person who, without the licence of the copyright owner—  (a) makes,  (b) imports into the United Kingdom,  (c) possesses in the course of a business, or  (d) sells or lets for hire, or offers or exposes for sale or hire, an article specifically designed or adapted for making copies of that work, knowing or having reason to believe that it is to be used to make infringing copies.  (2) Copyright in a work is infringed by a person who without the licence of the copyright owner transmits the work by means of a telecommunications system (otherwise than by [F58communication to the public]), knowing or having reason to believe that infringing copies of the work will be made by means of the reception of the transmission in the United Kingdom or elsewhere.25 Secondary infringement: permitting use of premises for infringing performance.  (1) Where the copyright in a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is infringed by a performance at a place of public entertainment, any person who gave permission for that place to be used for the performance is also liable for the infringement unless when he gave permission he believed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performance would not infringe copyright.  (2) In this section “place of public entertainment” includes premises which are occupied mainly for other purposes but are from time to time made available for hire for the purposes of public entertainment.26 Secondary infringement: provision of apparatus for infringing performance, &c.  (1) Where copyright in a work is infringed by a public performance of the work, or by the playing or showing of the work in public, by means of apparatus for—  (a) playing sound recordings,  (b) showing films, or  (c) receiving visual images or sounds conveyed by electronic means, the following persons are also liable for the infringement. (2) A person who supplied the apparatus, or any substantial part of it, is liable for the infringement if when he supplied the apparatus or part—  (a) he knew or had reason to believe that the apparatus was likely to be so used as to infringe copyright, or  (b) in the case of apparatus whose normal use involves a public performance, playing or showing, he did not believe on reasonable grounds that it would not be so used as to infringe copyright. (3) An occupier of premises who gave permission for the apparatus to be brought onto the premises is liable for the infringement if when he gave permission he knew or had reason to believe that the apparatus was likely to be so used as to infringe copyright.  (4) A person who supplied a copy of a sound recording or film used to infringe copyright is liable for the infringement if when he supplied it he knew or had reason to believe that what he supplied, or a copy mad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t, was likely to be so used as to infringe copyright.Chapter III Acts Permitted in relation to Copyright Works* 1. [Chapter IV Moral Rights](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8/48/part/I/chapter/IV/2012-03-14)

Chapter V Dealings with Rights in Copyright WorksChapter VI Remedies for InfringementChapter VII Copyright LicensingChapter VIII The Copyright TribunalChapter IX Qualification for and Extent of Copyright ProtectionChapter X Miscellaneous and General**Part II Rights in performances**Chapter 1 IntroductoryChapter 2 Economic RightsChapter 3 Moral RightsChapter 4 Qualification for Protection, Extent and Interpretation**Part III Design Right**Chapter I Design right in original designsChapter II Rights of Design Right Owner and RemediesChapter III Exceptions to Rights of Design Right OwnersChapter IV Jurisdiction of the Comptroller and the CourtChapter V Miscellaneous and General**Part IV Registered Designs****Part V Patent Agents and Trade Mark Agents****Part VI Patents****Part VII Miscellaneous and General** | **Part 1 저작권**제1장 저작권의 존재, 소유 및기간제2장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 .*저작권의 간접침해*22. 저작권침해 복제품의 수입작품의 저작권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품임을 알면서 또는 그럴만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물건을 사적 및 국내적 사용 이외에 영국으로 수입하는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다.23. 저작권침해 복제품의 소유 또는 거래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품임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물건으로 다음을 하는 사람에 의해 침해된다.(a) 사업적으로 소유(b) 판매 또는 사용을 하게 하는 것, 또는 판매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노출시키는 것(c) 사업상 대중에게 전시 또는 배포, 또는 (d) 저작권 소유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정도로 사업 외에 배포하는 것24.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품을 만드는 수단의 제공(1)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없이 특별히 고안된 물건 또는 그 작품의 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채택된 물건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침해된다.(a) 제작(b) 영국으로 수입(c) 사업적 소유, 또는(d) 판매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판매나 사용을 위하여 제공 또는 노출시킴.(2) 영국이나 그 외 지역에서 전송의 수신을 하는 것이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알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통신체계(telecommunication system) 수단으로 작품을 전송하는(대중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 사람에 의하여 작품의 저작권이 침해된다. 25. 저작권을 침해하는 실연을위하여 부지사용을 허용하는 것(1) 문학, 드라마 또는 음악적 작품에서 저작권이 공공오락(public entertainment)의 장소에서 하는 공연에 의해 침해당한다. 공연을 위하여 그 곳에서 사용을 허가한 사람도 그 공연이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믿고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한 위반에 책임이 있다.(2) 이 조항에서 “공공오락 장소”는 다른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부지를 포함하지만 때때로 공공오락을 목적으로 대여될 수 있는 곳이다. 26. 저작권을 침해하는 공연을 위한 장비 그리고 저작권 조항(1) 작품의 대중공연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된 상황, 또는 공공장소에서 작품을 연주 또는 상영함으로써 침해된 상황에서 다음을 위하여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a) 녹음 재생(b) 영화 상영, 또는(c) 전자수단으로 전달된 영상이미지나 소리를 받는 것, 다음의 사람들도 침해에 책임이 있다.(2) 장비를 공급하는 사람, 또는 그와 관련되어 주요 부분에 관여한 사람이, 만약 그가 장비 및 그 일부를 공급할 때 다음과 같다면 위반에 책임이 있다.(a) 그 장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b) 장비의 일반적인 용도가 대중공연, 재생이나 상영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가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경우.(3) 만약, 부지의 주인이 허가를 하였을 때, 그가 그 장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었거나 그렇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 부지로 장비의 반입을 허용한 부지의 주인도 침해에 책임이 있다.(4)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된 녹음이나 영화의 복제품을 공급한 사람이 만약, 그가 공급을 할 때, 그가 공급했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사본이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었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침해에 책임이 있다.제3장 저작권 작품과 관련된허용된 행위제4장 저작인격권제5장 저작권 작품에서 권리를 다룸제6장 침해의 구제제7장 저작권 면허제8장 저작권 재판소제9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격 및 저작권 보호의 범위제10장 기타 및 일반**Part 2. 실연에서 권리**제1장 소개제2장 경제적 권리제3장 인격권제4장 보호 자격, 범위 및 해석**Part 3. 의장권**제1장 원본 디자인의 의장권제2장 의장권 소유자의 권리와 구제제3장 의장권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예외제4장 감사원과 법원의 관할제5장 기타 및 일반**Part 4. 의장등록****Part 5. 특허대행사 및 상표대행사****Part 6. 특허****Part 7. 기타 및 일반** |